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 정	2025. 2. 11.
개 정	2025. 2. 17.
개 정	2025. 3. 25.
개 정	2025. 8. 14.
개 정	2025. 9. 8.
개 정	2026. 8. 10.
개 정	2026. 9. 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세칙에서 “외국주식예탁증권”, “코스피200”, “코스닥150” 및 “섹터지수”란 각각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2조제1항제4호,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조제1항제30호,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조제1호·제2호 및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조제6항제1호·제8조의6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주식예탁증권”, “코스피200”, “코스닥150” 및 “섹터지수”를 말한다. <개정 2025. 8. 14.>

② 이 세칙에서 “지수차익거래”, “비차익거래”, “섹터지수차익거래”, “주식차익거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차익거래”, “상장지수증권차익거래”, “주식예탁증권차익거래” 및 “외국주식예탁증권차익거래”란 각각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및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지수차익거래”, “비차익거래”, “섹터지수차익거래”, “주식차익거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차익거래”, “상장지수증권차익거래”, “주식예탁증권차익거래” 및 “외국주식예탁증권차익거래”를 말한다.

③ 제1항 외에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넥스트레이드의 업무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최유리지정가호가의 가격) 규정 제2조제1항제4호다목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가격을 말한다.

1. 매도의 최유리지정가호가의 경우 해당 호가의 접수시점에서 다음 각 목의 가격

가. 가장 높은 매수호가(중간가호가는 제외한다. 이하 제4조제2호가목 및 제6조에서 같다)의 가격

나. 매수호가 없는 경우 가장 낮은 매도호가의 가격보다 1호가가격단위 낮은 가격(하한가를 한도로 한다)

다. 매도호와 매수호가 없는 경우 직전의 가격(직전의 가격이 호가가격단위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그 가격보다 낮고 호가가격단위와 일치하는 가격 중 그 가격에 가장 가까운 가격)

2. 매수의 최유리지정가호가의 경우 해당 호가의 접수시점에서 다음 각 목의 가격

가. 가장 낮은 매도호가(중간가호가는 제외한다. 이하 제4조제1호가목 및 제6조에서 같다)의 가격

나. 매도호가 없는 경우 가장 높은 매수호가의 가격보다 1호가가격단위 높은 가격(상한가를 한도로 한다)

다. 매도호와 매수호가 없는 경우 직전의 가격(직전의 가격이 호가가격단위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그 가격보다 높고 호가가격단위와 일치하는 가격 중 그 가격에 가장 가까운 가격)

제4조(최우선지정가호가의 가격) 규정 제2조제1항제4호라목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가격을 말한다.

1. 매도의 최우선지정가호가의 경우 해당 호가의 접수시점에서 다음 각 목의 가격

가. 가장 낮은 매도호가의 가격

나. 매도호가 없는 경우 직전의 가격(직전의 가격이 호가가격단위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그 가격보다 높고 호가가격단위와 일치하는 가격 중 그 가격에 가장 가까운 가격)

2. 매수의 최우선지정가호가의 경우 해당 호가의 접수시점에서 다음 각 목의 가격

가. 가장 높은 매수호가의 가격

나. 매수호가 없는 경우 직전의 가격(직전의 가격이 호가가격단위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그 가격보다 낮고 호가가격단위와 일치하는 가격 중 그 가격에 가장 가까운 가격)

제5조(스톱지정가호가의 가격결정참여) ① 규정 제2조제1항제4호마목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때”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도의 스톱지정가호가의 경우

해당 종목의 가격이 호가의 가격결정에 참여하는 시점을 정하기 위한 가격(이하 “스톱가격”이라 한다)과 같거나 낮게 된 때. 다만, 해당 호가를 접수한 때에 해당 종목의 가격(해당 시점까지 매매거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스톱가격과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해당 호가를 접수한 때로 한다.

2. 매수의 스톱지정가호가의 경우

해당 종목의 가격이 스톱가격과 같거나 높게 된 때. 다만, 해당 호가를 접수한 때에 해당 종목의 가격이 스톱가격과 같거나 높은 경우에는 해당 호가를 접수한 때로 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스톱지정가호가 간의 가격결정에 참여하는 순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스톱가격이 높은 매도호가는 스톱가격이 낮은 매도호가에 우선하고, 스톱가격이 낮은 매수호가는 스톱가격이 높은 매수호가에 우선한다.

2. 스톱가격이 같은 스톱지정가호가 간에는 호가가 행하여진 시간의 선후에 따라 먼저 접수된 호가가 뒤에 접수된 호가에 우선한다.

제6조(중간가호가의 가격) 규정 제2조제1항제4호바목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가격”이란 가장 낮은 매도호가의 가격과 가장 높은 매수호가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을 말한다.

제7조(회원전산센터) 규정 제2조제1항제13호나목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장소”란 회원시스템과 NXT시스템을 연결하기 위해 필요한 회원의 라우터, 스위치, 정보보호시스템 등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를 말한다. 다만, NXT시스템과 직접 연결

되지 않고 일부 위탁자 주문의 접수·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회원시스템은 제외한다.

제2장 시장의 운영

제1절 시장의 구분 및 개폐

제8조(매매거래시간) ① 규정 제3조제3항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시간”이란 다음 각 호의 시간을 말한다.

1. 정규시장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간

가. 프리마켓 : 8시부터 8시 50분까지

나. 메인마켓 : 9시 0분 30초부터 15시 20분까지

다. 애프터마켓 : 15시 40분부터 20시까지. 다만, 애프터마켓의 종료 2분 전 이후에 규정 제24조제1항에 따라 매매계약체결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시점까지로 한다. <단서신설 2026. 9. 9.>

2. 종가매매시장 : 15시 30분(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의 정규시장의 최종 가격이 15시 30분 이후에 결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16시까지

3. 대량·바스켓매매시장 : 8시부터 20시까지 <개정 2026. 9. 9.>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넥스트레이드는 제1항에 따른 매매거래시간을 임시로 변경할 수 있다.

1. 연초개장일

2. 규정 제25조에 따른 전산장애가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관리상 필요한 경우

제9조(시장의 임시정지 및 재개 등) ① 규정 제5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한국거래소가 전산장애가 발생하거나 장애가 예상되어 매매거래를 정지·중단하거나 종결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6. 9. 9.>

② 규정 제5조제2항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때”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지한 경우

한국거래소가 매매거래의 재개를 위한 호가의 접수를 개시한 시점부터 10분이 경과한 때

2. 규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지한 경우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넥스트레이드가 정하는 때

③ 넥스트레이드는 규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장의 매매거래를 정지·종결 또는 재개하는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공표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넥스트레이드는 시장관리상 필요한 경우 매매거래의 재개시점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6. 9. 9.>

제2절 호가

제10조(다수계좌와 관련된 주문내용의 일괄호가) ① 규정 제8조 단서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회원이 영 제99조제2항제4호에 따라 개별 투자일임채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자기 명의의 계좌로 주문내용을 호가하는 경우. 이 경우 투자일임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2. 신탁업을 영위하는 회원이 영 제109조제1항제5호에 따라 개별 신탁재산(자기 주식 취득 또는 처분을 위한 신탁재산은 제외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자기 명의의 계좌로 주문내용을 호가하는 경우. 이 경우 신탁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3.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른 외국인투자자집단의 투자운용을 위하여 외국 금융투자업자, 대표투자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명의의 계좌로 주문내용을 호가하는 경우

4. 그 밖에 관련법규에 따라 투자중개업자 명의의 계좌 등으로 주문내용을 호가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

② 회원이 제1항에 따라 다수의 계좌와 관련된 주문내용을 일괄하여 호가하는 경우 별도의 계좌로 하여야 한다.

제11조(호가접수시간) ① 규정 제9조제2항에 따라 호가접수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규시장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간

가. 프리마켓 : 8시부터 8시 50분까지

나. 메인마켓 : 9시 0분 30초부터 15시 20분까지

다. 애프터마켓 : 15시 30분부터 20시까지. 다만, 애프터마켓의 종료 2분 전 이후에 규정 제24조제1항에 따라 매매계약체결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시점까지로 한다. <단서신설 2026. 9. 9.>

2. 종가매매시장 : 15시부터 16시까지

3. 대량·바스켓매매시장 : 8시부터 20시까지 <개정 2026. 9. 9.>

②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넥스트레이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호가접수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제8조제2항에 따라 매매거래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2. 그 밖에 시장관리상 필요한 경우

제12조(호가의 입력내용) ① 규정 제10조에 따라 회원이 NXT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는 호가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정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장의 구분

2. 종목

3. 수량

4. 규정 제2조제1항제4호 각 목에 따른 호가 유형의 구분

5. 가격(시장가호가, 최유리지정가호가, 최우선지정가호가, 중간가호가, 종가매매 시장의 호가 또는 이미 제출한 호가를 취소하는 호가의 경우는 제외한다)

6. 매도 또는 매수의 구분

7. 매도호가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

가. 규정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매도로 보지 아니하는 매도호가

나. 규정 제16조제2항에 따른 차입공매도호가

다. 그 밖의 매도호가

8. 스톱지정가호가의 경우 스톱가격

9. 회원번호

10. 지점번호

11. 계좌번호

12. 주문번호

13. 취소·정정호가의 경우 그 구분 및 원주문번호

14. 위탁매매 또는 자기매매의 구분

15. 호가의 생성 방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구분

- 가. 고속 알고리즘거래 호가
 - 나. 가목의 호가를 제외한 알고리즘거래 호가
 - 다. 그 밖의 호가
16. 규정 제45조제2항에 따른 고속 알고리즘거래계좌(다목의 경우 규정 제44조 제2항에 따른 알고리즘거래계좌를 포함한다)로 호가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제43조제6항에 따른 고속 알고리즘거래번호. 다만, 제15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호가인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른 자전거래방지조건 또는 제18조에 따른 일괄호가취소를 적용하려는 경우에 한한다.
 - 나. 제14조에 따른 자전거래방지조건을 부여하는 호가의 경우 그 조건
 - 다. 제18조에 따라 일괄호가취소를 신청하려는 경우 별표 1의 호가그룹번호
1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좌의 경우 그 구분
- 가.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라 호가하는 경우(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 명의의 계좌 또는 개별 신탁재산별로 설정된 회원 명의의 계좌로 호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구분
 - 나. 「금융투자업규정」 제6-7조제7항에 따른 외국인 통합계좌로 호가하는 경우 그 구분
18.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89조제1항 및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42조제5항에 따라 위탁증거금을 징수하는 위탁자의 경우 그 구분
19.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른 신용거래의 경우 그 구분
20. 「금융투자업규정」 제5-49조의2에 따른 차액결제거래(이하 “차액결제거래”라 한다)와 연계된 매매거래의 경우 그 구분
21. 차익거래를 위한 호가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
- 가. 지수차익거래
 - 나. 섹터지수차익거래
 - 다. 주식차익거래
 - 라.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차익거래이면서 비차익거래
 - 마.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차익거래이면서 비차익거래가 아닌 거래
 - 바. 상장지수증권차익거래이면서 비차익거래
 - 사. 상장지수증권차익거래이면서 비차익거래가 아닌 거래

- 아. 주식예탁증권차익거래
- 자. 외국주식예탁증권차익거래
- 22. 주식집단을 매매하기 위한 호가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
 - 가. 비차익거래(나목 및 제21호라목·바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 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을 위한 거래로서 비차익거래인 경우
 - 다.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을 위한 거래로서 비차익거래가 아닌 경우
- 23. 제37조제14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조건이 부여된 경우 그 조건 <개정 2026. 9. 9.>
- 24. 국가 구분
- 25. 외국인의 경우 「금융투자업규정」 제6-1조제14호에 따른 식별수단(이하 “외국인 식별수단”이라 한다)의 유무 및 국내 거주 여부. 이 경우 「금융투자업규정」 제6-1조제2호에 따른 내국민대우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식별수단이 없는 것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 26.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투자자분류코드. 이 경우 차액결제거래와 연계된 매매거래의 경우 차액결제거래를 체결한 투자자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 가. 금융투자업자 : 1000
 - 나. 보험회사 : 2000
 - 다. 집합투자기구
 - (1) (2) 외의 집합투자기구 : 3000
 - (2) 사모집합투자기구 : 3100
 - 라. 은행(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은 다목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 4000
 - 마. 기타 금융기관 : 5000
 - 바. 연금, 기금 및 공제회 : 6000
 - 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 및 공익기관 : 7000
 -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 외의 법인 : 7100
 - 자. 개인 : 8000
- 27.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주문(마목의 경우 호가를 포함한다) 입력방법의 구분 및 주문입력매체의 식별번호(나목은 제외한다)
 - 가. 위탁자로부터 문서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매매거래를 위탁받아 회원의

임직원이 영업점단말기에 이를 입력하는 방법 : 영업점단말기의 아이피(IP) 주소 및 MAC 주소

나. 위탁자가 유선통신단말기를 이용하여 주문내용을 직접 회원시스템에 입력하는 방법

다. 위탁자가 무선통신단말기를 이용하여 주문내용을 직접 회원시스템에 입력하는 방법 : 무선통신단말기 고유번호

라. 위탁자가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문내용을 직접 회원시스템에 입력하는 방법 : 아이피(IP) 주소 및 MAC 주소

마. 그 밖의 방법으로 주문내용을 입력하는 방법: 주문입력매체를 식별할 수 있는 고유번호

27의2. 위탁자 또는 회원이 「금융투자업규정」 제6-37조제2항에 따른 공매도 등록번호(이하 “공매도 등록번호”라 한다)를 발급받은 경우 공매도 등록번호 <신설 2025. 3. 25.>

28. 다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위탁을 받은 경우 위탁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식별할 수 있는 번호

29. 위탁자가 호가를 제출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지정한 경우 그 구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량·바스켓매매시장의 호가를 제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입력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내용(제1항제4호·제8호·제15호·제16호·제23호는 제외한다)

2. 대량매매 또는 바스켓매매의 구분

3. 협상번호, 협상상세번호 및 협상자명

③ 넥스트레이드는 회원 간 합병 후 회원시스템의 변경의 지연 등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제9호의 회원번호(제2항에서 인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복수로 부여할 수 있다.

④ 회원은 지점번호 또는 계좌번호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내용을 지체 없이 넥스트레이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회원은 다른 투자중개업자로부터 위탁의 주선을 받아 이를 호가하는 경우 그 다른 투자중개업자에 위탁한 자를 기준으로 계좌번호 및 투자자분류코드 등을 입력하여야 한다.

⑥ 넥스트레이드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외에 호가의 입력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호가의 효력) ① 규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호가의 경우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1. 규정 제5조제1항, 제23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에 따라 매매거래를 정지한 경우 해당 정지 기간 중 접수된 호가. 다만, 해당 정지 기간 중 접수된 취소호가(제17조에 따른 계좌단위호가처리 및 제18조에 따른 일괄호가취소가 적용된 호가를 포함한다)는 그 효력을 인정한다. <본문개정 2026. 9. 9.>
2. 8시 50분부터 9시 0분 30초까지 및 15시 20분부터 15시 30분까지 접수된 호가. 다만, 해당 시간 중 접수된 취소호가(제17조에 따른 계좌단위호가처리 및 제18조에 따른 일괄호가취소가 적용된 호가를 포함한다)는 그 효력을 인정한다.
3. 메인마켓의 종료시점까지 매매거래가 성립되지 아니한 다음 각 목의 호가.
이 경우 해당 호가는 메인마켓의 종료시점에 이를 취소한 것으로 본다.
가. 스톱지정가호가(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호가에 한한다)
나. 중간가호가
다. 삭제 <2026. 9. 9.>
4. 회원규정 제4조 제3항에 따라 메인마켓에서의 매매거래가 제한되는 회원이 프리마켓의 호가접수시간 동안에 제출한 호가 중 프리마켓의 종료시점까지 매매거래가 성립되지 아니한 호가

5. 그 밖에 그 효력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넥스트레이드가 인정하는 호가

② 규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간가호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시점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1.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를 위한 호가접수시간의 개시 전까지 매매거래가 성립되지 아니한 수량 : 매매계약체결방법을 복수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로 변경하고 제6조에 따른 가격을 산출하기 위한 매도호가와 매수호가 모두 있는 때
2. 복수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의 방법에 따른 매매거래 중 제6조에 따른 가격을 산출하기 위한 매도호가 또는 매수호가 없는 경우 : 제6조에 따른 가격을 산출하기 위한 매도호가와 매수호가 모두 있는 때 <본항개정 2026. 9. 9.>

③ 제37조제14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조건이 부여된 호가의 경우 해당 호가의 수량 중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수량은 이를 취소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6. 9. 9.>

1. IOC 조건이 부여된 호가의 경우 호가의 접수시점에서 호가한 수량 중 매매계약을 체결시킬 수 있는 수량을 제외한 나머지 수량
2. FOK 조건이 부여된 호가의 경우 호가의 접수시점에서 호가한 수량의 전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수량의 전부
3. GTP 조건이 부여된 호가의 경우 프리마켓의 종료시점까지 매매거래가 성립되지 아니한 수량 <신설 2026. 9. 9.>

제14조(자전거래방지조건 호가의 효력) ① 규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고속 알고리즘거래자의 호가 중 고속 알고리즘거래번호가 같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건이 부여된 양방향 호가 간에 매매체결이 가능한 경우 나중에 접수된 호가에 부여된 조건을 기준으로 해당 호가의 수량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1. 먼저 접수된 호가의 잔량을 모두 취소하는 조건
 2. 나중에 접수된 호가의 전수량을 취소하는 조건
 3. 양방향 호가 간 매매체결이 가능한 수량을 각각 취소하는 조건
- ② 제1항은 정규시장에서 복수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의 방법에 의하여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자전거래방지조건과 제37조제14호가목(1)에 따른 IOC조건이 모두 부여된 호가의 경우 자전거래방지조건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15조(호가입력의 제한) ① 회원이 규정 제3조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장별로 입력할 수 있는 호가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프리마켓의 호가접수시간 : 지정가호가, 최유리지정가호가 및 최우선지정가호가 <개정 2026. 8. 10., 2026. 9. 9.>
2. 메인마켓의 호가접수시간 : 지정가호가, 최유리지정가호가, 최우선지정가호가, 스톱지정가호가, 시장가호가 및 중간가호가
3. 애프터마켓의 호가접수시간 : 지정가호가, 최유리지정가호가 및 최우선지정가호가 <단서삭제 2026. 9. 9.>

② 규정 제12조제2항에 따라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호가를 입력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호가수량이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수량을 초과하는 호가. 다만, 대량·바스켓매매시장의 호가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규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준가격에 상장증권수를 곱한 금액(이하 이 호에서 “시가총액”이라 한다)이 10조원 이상 : 1,000억원을 기준가격으로 나눈 수량(정규시장의 매매수량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나. 시가총액이 1,000억원 이상 10조원 미만 : 상장증권수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수량

다. 시가총액이 2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 10억원을 기준가격으로 나눈 수량

라. 시가총액이 200억원 미만 : 상장증권수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최유리지정가호가, 최우선지정가호가 또는 제37조제14호가목에 따른 조건이 부여된 호가

가. 규정 제17조에 따라 가격이 제한되는 차입공매도호가

나. 종가매매시장의 호가

다. 대량·바스켓매매시장의 호가

라.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를 위한 호가접수시간의 경우 <개정 2026. 9. 9.>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장가호가

가.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26. 9. 9.>

나. 제37조제14호가목에 따른 IOC조건 또는 FOK조건을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스톱지정가호가

가.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나. 매도호가의 경우 호가의 가격이 스톱가격보다 높은 경우

다. 매수호가의 경우 호가의 가격이 스톱가격보다 낮은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간가호가

가.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26. 9. 9.>

나. 제6조에 따른 가격을 산출하기 위한 매도호가 또는 매수호가 없는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37조제14호나목의 조건이 부여된 호가
가. 메인마켓 및 애프터마켓의 호가접수시간의 경우

나. 제2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 <본호신설 2026. 9. 9.>

③ 회원은 위탁자로부터 위탁받은 매매체결대상상품의 주문수량이 제2항제1호
각 목에서 정하는 수량을 초과하는 때에는 이를 분할하여 호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넥스트레이드는 시장관리상 필요한 경우 호가
의 유형 및 조건별로 입력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6조(호가의 취소 및 정정) ① 규정 제13조제2항에 따라 회원은 호가한 수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규정 제13조제2항에 따라 회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호가를 정정할 수
있다.

1. 지정가호가, 최유리지정가호가, 최우선지정가호가 및 스톱지정가호가를 각각
같은 유형의 호가로 정정하는 경우 호가한 수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가
격으로 정정. 다만, 최유리지정가호가 및 최우선지정가호가의 경우에는 정정
전의 호가의 가격과 정정 후의 호가의 가격이 다른 경우에 한한다.

2. 지정가호가, 최유리지정가호가 및 최우선지정가호가를 각각 다른 유형의 호
가 또는 시장가호가로 정정하는 경우 호가한 수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유형의 호가로 정정.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
정 전의 호가의 가격과 정정 후의 호가의 가격이 다른 경우에 한한다.

가. 지정가호가를 최유리지정가호가 또는 최우선지정가호가로 정정하는 경우

나. 최유리지정가호가를 지정가호가 또는 최우선지정가호가로 정정하는 경우

다. 최우선지정가호가를 지정가호가 또는 최유리지정가호가로 정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호가를 정정하는 경우 그 효력은 정정호가를 접수한 때로 한
다.

제17조(계좌단위호가처리) ① 회원은 시스템 장애, 착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
유로 위험관리상 필요한 경우 알고리즘거래계좌(고속 알고리즘거래계좌를 포함
하며, 신청일의 전날까지 규정 제44조제2항 및 제45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계좌
에 한한다. 이하 제18조에서 같다)별로 정규시장에 접수된 모든 호가의 취소와
추가적인 호가 접수의 정지(이하 “계좌단위호가처리”라 한다)를 넥스트레이드

에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좌단위호가처리의 신청은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원 시스템을 통하여 NXT시스템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알고리즘거래계좌번호 또는 고속 알고리즘거래계좌번호
2.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의 구분
3. 그 밖에 넥스트레이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회원은 계좌단위호가처리를 신청한 때부터 10분이 경과한 이후에 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그 해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이 종료되는 때까지 회원이 그 해제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넥스트레이드는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이 종료되는 때에 계좌단위호가처리를 해제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넥스트레이드는 시스템 장애,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계좌단위호가처리의 신청이나 그 해제의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⑤ 회원은 계좌단위호가처리와 관련된 자료를 10년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⑥ 넥스트레이드는 시장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원에게 제5항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원은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18조(일괄호가취소) ① 회원은 알고리즘거래와 관련된 위험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알고리즘거래계좌별 또는 고속 알고리즘거래번호별로 조건을 정하여 정규시장에 접수된 모든 호가의 취소(이하 “일괄호가취소”라 한다)를 넥스트레이드에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일괄호가취소의 신청은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원 시스템을 통하여 NXT시스템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한다.

1. 별표 1에 따른 일괄호가취소 신청사항
2. 그 밖에 넥스트레이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넥스트레이드는 시스템 장애,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일괄호가취소의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④ 회원은 일괄호가취소와 관련된 자료를 10년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⑤ 넥스트레이드는 시장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원에게 제4항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원은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19조(호가의 기록) ① 규정 제14조제1항에 따른 호가의 기록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호가집계표에 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호가집계표에는 매도·매수를 구분한 가격별 합계수량을 기재한다.

제3장 매매체결대상상품의 매매거래

제1절 호가의 관리 및 가격제한

제20조(차입공매도호가의 가격제한) 규정 제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이 차입공매도를 하거나 그 위탁을 받아 호가를 하는 경우 기준가격 이하의 가격으로 호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해당 호가가 접수되는 때까지 가격이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2. 최초가격과 기준가격이 같은 경우로서 그 가격과 다른 가격의 매매거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제2절 호가 및 매매수량단위

제21조(호가단위) ① 규정 제19조에 따른 호가수량단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권 : 1주
2. 증권예탁증권 : 1증권

② 규정 제19조에 따른 호가가격단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주(1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가격이 2,000원 미만인 종목 : 1원
2. 1주의 가격이 2,000원 이상 5,000원 미만인 종목 : 5원
3. 1주의 가격이 5,000원 이상 20,000원 미만인 종목 : 10원
4. 1주의 가격이 20,000원 이상 50,000원 미만인 종목 : 50원
5. 1주의 가격이 50,000원 이상 200,000원 미만인 종목 : 100원
6. 1주의 가격이 200,000원 이상 500,000원 미만인 종목 : 500원
7. 1주의 가격이 500,000원 이상인 종목 : 1,000원

제22조(매매수량단위) ① 규정 제19조에 따른 매매수량단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권 : 1주

2. 증권·예탁증권 : 1증권

②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호가폭주 등으로 전산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시장관리상 필요한 경우 매매수량단위를 변경할 수 있다.

제3절 매매계약의 체결

제23조(단일가매매 참여호가의 범위 등) ① 규정 제21조제2항에 따라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에 참여하는 호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간 동안 접수된 호가로 하고, 해당 호에서 정하는 호가접수시간의 개시 전에 접수한 호가 중 매매거래가 성립되지 아니한 호가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1. 규정 제21조제1항제1호의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애프터마켓의 호가접수를 개시한 때부터 10분간

2. 규정 제2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매매거래를 재개하기 위한 호가를 접수한 때부터 30초간

3. 규정 제21조제1항제4호의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매매계약체결방법을 변경한 때부터 2분간

② 규정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가격을 결정할 때 잠정체결가격이 규정 제2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호가접수시간을 2분간 연장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호가로 규정 제21조제1항 각 호의 가격을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 그 이후의 가격은 복수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의 방법으로 변경하여 결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제1항제2호·제3호 및 제2항에 따른 호가접수시간의 종료시점이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프리마켓 또는 메인마켓의 종료시점 이후인 경우에는 제1항제2호·제3호 및 제2항에 따른 호가접수시간은 프리마켓 및 메인마켓의 종료시점까지로 한다.

[전문개정 2026. 9. 9.]

제24조(합치가격이 두 개 이상인 경우의 가격 결정) 규정 제21조제4항(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적용할 때 해당 단일가매매를 위한 호가접수의 개시 전까지 매매거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가격을 직전의 가격으로 본다. <개정 2026. 9. 9.>

제24조의2(단일가매매의 적용 특례) ① 규정 제21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2항에 따른 호가접수시간이 종료하는 때에 매매거래를 성립시키지 아니한다.

1. 메인마켓의 종료 30초 전 이후에 규정 제5조제2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라 매매거래를 재개하는 경우
2. 프리마켓 또는 메인마켓의 종료 2분 전 이후에 규정 제24조에 따라 매매계약 체결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3. 프리마켓 또는 메인마켓의 종료 2분 전 이후에 제23조제2항에 따라 호가접수시간이 연장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프리마켓의 종료시점에 매매거래를 성립시키지 아니하는 경우 메인마켓의 최초 가격은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의 방법으로 변경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격 결정에 참여하는 호가는 메인마켓의 호가접수를 개시한 때부터 30초간 접수한 호가로 하고, 해당 호가접수시간의 개시 전에 접수한 호가 중 매매거래가 성립되지 아니한 호가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본조신설 2026. 9. 9.]

제25조(종목별 매매거래 정지 및 재개 등) ① 규정 제23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한국거래소가 전산장애가 발생하거나 장애가 예상되어 매매거래를 정지·중단하거나 종결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6. 9. 9.>

② 규정 제23조제2항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때”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지하는 경우

한국거래소가 매매거래의 재개를 위한 호가의 접수를 개시한 시점부터 10분이 경과한 때. 다만, 한국거래소가 해당 종목의 매매거래를 정지한 날에 이를 재개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매거래를 재개하는 날의 메인마켓의 호가접수를 개시하는 때로 한다. <단서개정 2025. 9. 8.>

2. 규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지하는 경우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넥스트레이드가 정하는 때

③ 넥스트레이드가 규정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매거래를 정지하거나 재개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표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넥스트레이드는 시장관리상 필요한 경우 매매거래의 재개시점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6. 9. 9.>

제26조(종목별 변동성완화장치) ① 규정 제24조제1항제1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비율” 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9. 9.>

1. 코스피200 구성 종목의 경우 : 3%

2. 그 밖의 종목의 경우 : 6%

② 규정 제24조제1항제2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비율” 이란 10%를 말한다. <신설 2026. 9. 9.>

③ 규정 제24조제2항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는 규정 제24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프리마켓, 메인마켓 및 애프터마켓의 최초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2. 규정 제2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규정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나. 규정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잠정체결가격이 규정 제2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매매거래에 참여하는 호가의 범위를 연장하여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넥스트레이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항개정 2026. 9. 9.>

④ 규정 제24조제1항을 적용할 때 하나의 호가가 다수의 선행호가와 순차적으로 체결되는 경우 제1항 각 호 및 제2항의 비율 미만의 가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시킬 수 있는 수량의 범위에서 매매거래를 성립시킨 후 매매계약체결방법을 변경한다. <개정 2026. 9. 9.>

⑤ 규정 제24조제3항에 따라 넥스트레이드는 호가 및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6. 9. 9.>

⑥ 규정 제24조제1항에 따른 매매계약체결방법의 변경은 제14조에 따른 자전거

래방지조건을 적용한 이후에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26. 9. 9.>

제27조(전산장애 또는 장애우려 시의 조치) ① 규정 제25조제1항에 따른 “회원시스템의 장애”란 회원시스템을 통하여 어떠한 호가도 시장으로 전달할 수 없는 장애(본점, 지점, 그 밖의 영업소 중 일부에서 장애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가 발생한 회원의 거래량(장애가 발생한 날이 속한 월의 전월의 말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1년간의 거래량을 기준으로 하며, 회원의 가입 또는 탈퇴 등이 있는 경우 이를 고려하여 산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합계가 시장의 총거래량의 100분의 80(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② 규정 제25조제2항에 따라 전산장애로 정상적인 매매체결이 어려운 경우 넥스트레이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장애의 원인이 된 호가의 취소
2. 호가접수의 정지 또는 매매거래의 정지
3. 매매거래의 종결 <본항신설 2026. 9. 9.>

③ 전산장애로 정상적인 매매체결이 곤란한 경우 해당 시점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호가는 해당 장애가 발생한 시점에 이를 취소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넥스트레이드는 회원에게 그 취소된 내용을 지체 없이 통보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장애를 복구한 이후에 이를 통보할 수 있다. <전단개정 2026. 9. 9.>

④ 제2항제2호에 따라 호가접수 또는 매매거래를 정지한 경우에는 전산장애를 복구한 때에 넥스트레이드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종목 또는 시장의 호가접수 또는 매매거래를 재개한다. <개정 2026. 9. 9.>

⑤ NXT시스템의 장애가 장시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넥스트레이드는 예비시스템을 이용하여 호가접수 또는 매매거래를 재개할 수 있으며,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가 발생한 시점에서 당일의 매매거래를 종결할 수 있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매매거래를 재개하는 경우 최초 가격의 결정은 단일 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의 방법에 의한다. 이 경우 해당 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참여하는 호가의 범위는 넥스트레이드가 그 때마다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26. 9. 9.>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외에 전산장애의 발생 또는 그 우려가 있는 경우의 호가접수 및 매매거래의 정지·재개 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 등은 넥스트

레이드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6. 9. 9.>

제28조(착오매매의 정정범위) 규정 제26조제1항에 따른 착오매매는 넥스트레이드 착오매매와 회원착오매매로 구분하며, 그 정정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넥스트레이드착오매매 : NXT시스템 또는 그 운영프로그램의 장애로 인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과정 또는 매매계약체결내용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호가 내용에 맞지 아니한 매매계약체결내용
2. 회원착오매매 : NXT시스템에 접수된 호가로서 회원(회원이 회원의 해외 계열회사 등으로부터 위탁자의 주문을 전달받는 과정에서 해당 계열회사 등의 착오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위탁자의 주문을 처리하는 과정, 해당 주문을 회원시스템에 입력하는 과정 또는 호가를 NXT시스템에 입력하는 과정에서 주문내용에 맞지 아니한 매매계약체결내용

제29조(착오매매의 정정방법) ① 착오매매로 인한 매매계약체결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정한다.

1. 넥스트레이드착오매매 : 정정이 가능한 경우 원래의 호가내용에 맞도록 정정하고, 그 밖의 경우 회원에게 상품으로 인수시키는 방법으로 정정한다.
2. 회원착오매매(규정 제27조를 적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종목, 수량, 가격 및 매도·매수 등에 대한 착오매매의 경우 착오분을 해당 회원의 상품으로 인수하는 방법으로 정정하고, 회원시스템 또는 그 운영프로그램의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한 위탁매매와 자기매매의 구분에 대한 착오매매의 경우 그 구분에 맞도록 정정한다.

② 규정 제26조제2항에 따라 회원착오매매의 정정을 신청하려는 회원은 회원착오매매가 발생한 때부터 그 다음 매매거래일의 15시 30분까지 회원시스템을 통하여 NXT시스템에 해당 착오매매와 그 정정에 관한 내용을 입력하여야 한다.

③ 넥스트레이드는 착오매매의 정정이 있는 경우 그 내역을 한국거래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30조(착오매매처리약정 등) ① 넥스트레이드는 넥스트레이드착오매매를 정정하는 경우 그 착오매매분을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라 회원의 상품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회원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착오매매처리약정을 체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넥스트레이드착오매매분을 회원의 상품으로 인수시킨 때에는 그 과정에서 발생한 손익을 정산한다. 이 경우 착오매매의 인수와 관련된 증권거래세 및 제반수수료 등은 손실로 계산한다.

③ 넥스트레이드는 제1항에 따른 착오매매처리약정에 따라 착오매매정산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정산한다.

제31조(대규모착오매매의 구제요건) 규정 제27조제1항 본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매매거래”란 계좌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매매거래를 말한다.

1. 정규시장에서 복수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의 방법으로 체결된 매매거래일 것
2. 해당 매매거래의 최초시점부터 종료시점까지의 시간이 30분 이내일 것
3. 해당 계좌의 착오매매종목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체결된 종목(이하 “구제대상종목”이라 한다)이 하나 이상일 것
 - 가. 착오로 매수한 경우 : 해당 매매거래가 성립하기 직전의 가격(해당 대규모착오매매가 당일의 최초의 매매거래인 경우에는 해당 매매거래의 최초의 가격을 말한다. 이하 “구제기준가격”이라 한다) 대비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상승한 가격
 - 나. 착오로 매도한 경우 : 구제기준가격 대비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하락한 가격
4. 해당 계좌의 착오매매종목의 체결가격과 구제기준가격과의 차액(구제기준가격과 매도체결가격과의 차액 또는 매수체결가격과 구제기준가격과의 차액을 말한다)에 해당 매매거래의 체결수량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가 100억원 이상일 것
5. 해당 매매거래가 같은 착오에 의하여 연속적으로 체결되었을 것
6. 그 밖에 안정적이고 원활한 결제를 위하여 해당 매매거래를 구제할 필요가 있을 것

제32조(대규모착오매매의 구제신청) ① 규정 제27조제2항에 따라 대규모착오매매의 구제를 신청하려는 회원(위탁자로부터 구제의 신청을 요청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은 대규모착오매매가 발생한 때부터 30분 이내에 회원시스템을 통하여

NXT시스템에 해당 대규모착오매매의 내용을 입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제를 신청한 회원은 그와 관련된 소명자료를 지체 없이 넥스트레이드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넥스트레이드는 소명자료의 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넥스트레이드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접수하는 때에는 해당 신청의 접수 사실 등을 지체 없이 공표하고, 이를 신청 회원, 상대방 회원 및 한국거래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33조(대규모착오매매의 구제방법) ① 규정 제27조제2항에 따라 넥스트레이드는 신청 내용 및 소명자료를 검토하여 회원이 구제를 신청한 날(이하 “구제신청일”이라 한다)의 다음 매매거래일 17시까지 구제 여부를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제를 결정한 경우 넥스트레이드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공표하고, 신청 회원, 상대방 회원 및 한국거래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대규모착오매매가 위탁매매인 경우에는 해당 회원은 이를 지체 없이 해당 위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넥스트레이드는 대규모착오매매의 구제를 결정한 경우 구제대상종목의 결제가격을 다음 각 호의 가격으로 변경할 수 있다.

1. 착오로 매수한 경우 : 구제기준가격 대비 100분의 10 높은 가격(그 가격이 호가가격단위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그 가격보다 높고 호가가격단위와 일치하는 가격 중 그 가격에 가장 가까운 가격)

2. 착오로 매도한 경우 : 구제기준가격 대비 100분의 10 낮은 가격(그 가격이 호가가격단위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그 가격보다 낮고 호가가격단위와 일치하는 가격 중 그 가격에 가장 가까운 가격)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32조제3항에 따른 구제신청접수의 공표 전에 상대방 회원이 구제대상종목을 거래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결제가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대규모착오매매로 인해 매수 또는 매도한 종목을 같은 계좌를 통하여 해당 매매거래의 체결수량 이내에서 매수한 종목을 매도하거나 매도한 종목을 매수(이하 이 항에서 “재매매”라 한다)하였을 것

2. 정규시장에서 복수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의 방법으로 체결된 매매거래일 것

3. 상대방 회원이 회원시스템을 통하여 NXT시스템에 재매매의 내용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결제가격의 변경을 신청할 것. 이 경우 제32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되, 신청시한은 제32조에 따른 구제 신청일의 다음 매매거래일 8시부터 10시까지(위탁자의 회원에 대한 신청시한은 구제신청일까지로 한다)로 한다.
- ⑤ 제4항에 따라 결제가격을 정하는 경우 체결순서에 따른 거래량가중평균방식,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가격 등을 고려하여 결제가격을 정한다.
 1. 매수한 종목을 매도한 경우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가격
 - 가. 체결가격이 제3항제2호에 따른 가격보다 낮고 대규모착오매매의 체결가격보다 높은 경우 : 체결가격(그 가격이 호가가격단위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그 가격보다 낮고 호가가격단위와 일치하는 가격 중 그 가격에 가장 가까운 가격)
 - 나. 체결가격이 대규모착오매매의 체결가격과 같거나 낮은 경우 : 대규모착오매매의 체결가격(그 가격이 호가가격단위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그 가격보다 높고 호가가격단위와 일치하는 가격 중 그 가격에 가장 가까운 가격)
 2. 매도한 종목을 매수한 경우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가격
 - 가. 체결가격이 제3항제1호의 가격보다 높고 대규모착오매매의 체결가격보다 낮은 경우 : 체결가격(그 가격이 호가가격단위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그 가격보다 높고 호가가격단위와 일치하는 가격 중 그 가격에 가장 가까운 가격)
 - 나. 체결가격이 대규모착오매매의 체결가격과 같거나 높은 경우 : 대규모착오매매의 체결가격(그 가격이 호가가격단위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그 가격보다 낮고 호가가격단위와 일치하는 가격 중 그 가격에 가장 가까운 가격)
- ⑥ 제32조제3항에 따라 넥스트레이드로부터 구제신청의 접수사실 등을 통지받은 상대방 회원은 위탁자 중 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위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구제신청일 중 해당 위탁자에게 제4항제3호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⑦ 넥스트레이드가 위탁매매로 인한 대규모착오매매 구제를 결정한 경우 회원은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변경된 결제가격을 적용하여 위탁자의 결제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 ⑧ 제3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넥스트레이드는 거래 및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가격을 변경할 수 있다.

제4절 종가매매시장 및 대량·바스켓매매시장

제34조(대량매매) ① 규정 제29조제1항에 따라 대량매매를 신청하려는 회원은 회원단말기를 통하여 종목, 수량 및 가격 등 매도와 매수 쌍방당사자 간에 협상한 내용을 회원시스템 및 NXT시스템에 통보하고 그 내용대로 호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량매매를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매도호가와 매수호가 중 어느 일방은 단일 회원의 호가로서 호가수량에 가격을 곱한 금액이 5천만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일 것

2. 「금융투자업규정」 제6-7조제1항제6호에 따른 매매거래의 경우 매도 및 매수 위탁자가 모두 외국인일 것

③ 제1항에 따른 협상내용은 회원이 그 내용에 따라 호가를 하기 전까지 당사자 쌍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④ 대량매매의 호가가격단위는 1원으로 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애로 인하여 회원단말기를 통하여 협상내용을 NXT시스템에 통보할 수 없는 경우 대량매매를 성립시키지 아니한다.

제35조(바스켓매매) ① 규정 제30조제1항에 따라 바스켓매매를 신청하려는 회원은 회원단말기를 통하여 종목, 수량 및 가격 등 매도와 매수 쌍방당사자 간에 협상한 내용을 회원시스템 및 NXT시스템에 통보하고 그 내용대로 호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바스켓매매를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매도호가와 매수호가 중 어느 일방은 단일 회원의 호가일 것

2. 「금융투자업규정」 제6-7조제1항제6호에 따른 매매거래의 경우 매도 및 매수 위탁자가 모두 외국인일 것

③ 규정 제30조제3항에 따른 바스켓 구성종목수 및 수량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5개 이상의 종목으로 바스켓을 구성할 것

2. 바스켓을 구성하는 각각의 종목에 대한 호가수량에 가격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이 2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일 것

④ 같은 바스켓을 구성하는 종목에 대하여 같은 바스켓번호를 부여하고, 한 회원이 2개 이상의 제1항에 따른 호가를 하는 경우 바스켓별로 번호를 달리하여야 한다.

⑤ 바스켓매매에 관하여는 제3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매매거래의 청산 및 결제

제36조(청산을 위한 정보의 제공) ① 규정 제31조제3항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회원명
 2. 종목명
 3. 체결수량 및 체결가격
 4. 매도 또는 매수의 구분
 5. 제29조에 따른 착오매매 정정의 경우 해당 정정내역
 6. 제33조에 따른 대규모착오매매 구제의 경우 해당 결제가격 변경내역
 7. 그 밖에 매매거래의 청산을 위하여 필요한 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은 서면(「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산자료의 방법에 의한다.

제5장 매매거래의 수탁 등

제37조(수탁의 내용) 규정 제35조제1항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규정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장의 구분
2. 규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주문 유형의 구분
3. 취소·정정을 위한 주문의 경우 그 구분
4. 종목
5. 수량
6. 매도 또는 매수의 구분
7. 가격(시장가주문, 최유리지정가주문, 최우선지정가주문, 중간가주문, 종가매매

시장의 주문, 목표가주문 또는 이미 제출한 주문을 취소하는 주문의 경우는 제외한다)

8. 스톱가격(스톱지정가주문의 경우에 한한다)

9. 차익거래와 관련된 주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

가. 지수차익거래

나. 섹터지수차익거래

다. 주식차익거래

라.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차익거래이면서 비차익거래

마.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차익거래이면서 비차익거래가 아닌 거래

바. 상장지수증권차익거래이면서 비차익거래

사. 상장지수증권차익거래이면서 비차익거래가 아닌 거래

아. 주식예탁증권차익거래

자. 외국주식예탁증권차익거래

10. 주식집단을 매매하기 위한 주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

가. 비차익거래(나목 및 제9호라목·바목은 제외한다)

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을 위한 거래로서 비차익거래인 경우

다.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을 위한 거래로서 비차익거래가 아닌 경우

11. 매도주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

가. 규정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매도로 보지 아니하는 매도호가를 위한 주문

나. 규정 제16조제2항에 따른 차입공매도호가를 위한 주문

다. 그 밖의 매도호가를 위한 주문

12. 현금거래 또는 신용거래의 구분

13. 차액결제거래와 연계된 매매거래인 경우 그 구분

1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건을 부여하는 경우 그 조건. 이 경우 가목(1)의 조건과 나목의 조건, 가목(2)의 조건과 나목 및 다목의 조건은 중복하여 부여할 수 없다. <후단개정 2026. 9. 9.>

가. 지정가주문, 시장가주문, 최유리지정가주문 및 중간가주문의 경우 다음의

조건

(1) 아이오씨(IOC) 조건 : 해당 주문과 관련된 호가의 접수시점에서 호가한 수량 중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수량에 대하여는 매매거래를 성립시키고,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수량은 취소하는 조건

(2) 에프오케이(FOK) 조건 : 해당 주문과 관련된 호가의 접수시점에서 호가한 수량의 전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 매매거래를 성립시키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수량의 전부를 취소하는 조건

나. 지정가주문, 최유리지정가주문 및 최우선지정가주문의 경우 프리마켓의 종료시점까지 매매거래가 성립되지 아니한 수량은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지티피(GTP) 조건 <신설 2026. 9. 9.>

다. 지정가주문, 최유리지정가주문 및 최우선지정가주문의 경우 제14조에 따른 자전거래방지조건

라. 주문에 대한 호가를 하는 시기

마. 그 밖에 주문에 관한 조건

15. 주문의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 그 유효기간

16. 주문의 접수시간

17. 제12조제1항제27호다목부터 마목까지에 따른 주문입력매체의 식별번호

18. 위탁자가 공매도 등록번호를 발급받은 경우 공매도 등록번호 <신설 2025. 3. 25.>

제6장 시장의 관리

제38조(호가정보의 공표) ① 규정 제40조제1항제3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를 위한 호가접수시간 중에는 예상체결가격·예상체결수량, 매도·매수별 예상최우선평가의 가격을 포함하는 연속 3개의 예상우선평가의 가격, 그 가격의 호가수량 및 해당 호가수량의 합계수량
2. 복수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를 위한 호가접수시간 중에는 매도·매수별 최우선평가(중간가호가는 제외한다)의 가격을 포함하는 연속 10개의 우선평가의 가격, 그 가격의 호가수량, 해당 호가수량의 합계수량 및 중간가호가의 총호가수량

3. 종가매매시장의 호가접수시간 중에는 매도·매수별 총호가수량

② 제1항에 따라 공표하는 예상체결가격 등의 산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상체결가격 및 예상체결수량 : 해당 시점까지 접수된 호가로 규정 제21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매매거래를 성립시킬 경우의 예상되는 가격 및 수량
2. 예상최우선평가의 가격을 포함하는 연속 3개의 예상우선평가의 가격 및 호가수량 : 매도·매수별 최우선평가의 가격을 포함하는 연속 3개의 예상우선평가의 가격 및 그 가격의 호가수량. 이 경우 제1호에 따른 예상체결가격의 형성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매매거래를 성립시킬 경우의 최우선평가를 기준으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넥스트레이드는 호가 폭주, 시스템 장애, 그 밖에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호가정보의 공표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9조(투자참고사항의 공표) 넥스트레이드는 규정 제4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투자참고사항으로 공표한다.

1. 대량매매 또는 바스켓매매가 이루어진 종목
2. 제6조에 따라 산출한 가격
3. 그 밖에 투자판단에 참고가 된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0조(시세 등의 공표방법) 규정 제40조제3항에 따라 시세 등의 공표는 회원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이를 제공하거나 넥스트레이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41조(회원통보) ① 규정 제42조에 따라 넥스트레이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업무관련규정의 제·개정
2. 종목
3. 시장의 임시 휴장, 매매거래의 정지·재개 및 매매거래시간의 변경
4. 회원의 가입 및 탈퇴

5. 회원의 매매거래정지 및 그 해제

6. 그 밖에 시장관리상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원통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넥스트레이드가 운영하는 전자전달매체 등에 게시

2. 문서(전자문서 등을 포함한다)에 의한 통보

제42조(알고리즘거래계좌의 신고방법) 규정 제44조제2항에 따라 알고리즘거래계좌의 신고는 별표 2에 따른 신고사항을 회원시스템을 통하여 NXT시스템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43조(고속 알고리즘거래자 등록 등) ① 규정 제45조제1항에 따라 회원이 해당 회원 또는 위탁자를 고속 알고리즘거래자로 등록하는 경우 회원단말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

1. 회원을 등록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고속 알고리즘거래자 등록신청서

나. 명칭 등 회원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넥스트레이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위탁자를 등록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이 경우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31조제5항 및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2조의4 제5항에 따라 거래자 등록번호를 발급받은 위탁자 또는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31조의3 및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2조의6에 따라 사용권한을 승인받은 위탁자를 등록하는 경우 나목은 제외한다.

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고속 알고리즘거래자 등록신청서

나.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고속 알고리즘거래자 등록정보 점검 확인서

다.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고속 알고리즘거래자 등록요건 확인서

라.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개인(신용)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마. 규정 제45조제1항에 따른 요건 충족에 관한 사항

바. 성명 또는 명칭 등 위탁자에 관한 사항

사. 그 밖에 넥스트레이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회원은 지체 없이 회원단말

기를 통해 그 변경된 내용을 입력하여야 한다.

③ 넥스트레이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입력된 내용에 흠결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규정 제45조제1항제3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104조의3제1항제3호 및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50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2. 규정 제45조제5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위탁자의 경우 그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을 것

⑤ 넥스트레이드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고속 알고리즘거래자별로 거래자 등록번호를 발급한다. 이 경우 고속 알고리즘거래자는 해당 등록번호에 위험관리번호(제14조에 따른 자전거래방지조건 및 제18조에 따른 일괄호가취소의 적용 범위를 구분하기 위한 두 자리의 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정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위험관리번호를 설정한 회원은 회원단말기를 통하여 고속 알고리즘거래번호(거래자 등록번호에 위험관리번호를 결합한 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고속 알고리즘거래계좌를 연결하여 넥스트레이드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⑦ 규정 제45조제4항제3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104조의3제5항제3호 및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50조의3제5항제3호에 따른 고속 알고리즘거래 수탁중단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⑧ 규정 제45조제5항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고속 알고리즘거래자로부터 고속 알고리즘거래를 수탁 중인 모든 회원이 그 수탁을 중단하는 경우

2. 그 밖에 고속 알고리즘거래자인 위탁자가 고속 알고리즘거래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제44조(고속 알고리즘거래자 등록에 관한 특례) 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다수의 위탁자를 일괄하여 고속 알고리즘거래자로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넥스트레이드는 다수의 위탁자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하나의 거래자 등록번호를 그 위탁자들을 대표하는 자(이하 이 항에서 “대표위탁자”

라 한다)에게 발급할 수 있다.

1. 위탁자가 대표위탁자의 계열회사등(「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 및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의2까지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 및 증손회사를 말하며,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 기업을 포함한다)일 것
2. 모든 위탁자가 같은 매매주문시스템을 사용할 것
3. 회원이 각각의 위탁자에 대하여 규정 제45조제1항에 따른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것

② 회원이 이미 다른 회원에 의해 고속 알고리즘거래자로 등록된 위탁자로부터 고속 알고리즘거래를 수탁하려는 경우 넥스트레이드에 해당 위탁자의 거래자 등록번호에 대한 사용권한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규정 제45조제1항 후단 및 이 세칙 제4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가목은 제외한다)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제45조(회원의 고속 알고리즘거래 관리의무) ① 규정 제46조제1항에 따라 회원은 매매주문시스템 등 전산시스템이 고속 알고리즘거래를 하기에 적합한 안정성 및 적정성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각 호와 같이 점검하여야 한다.

1. 규정 제45조에 따른 등록 신청 전 전산시스템 점검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위탁자가 설치한 매매주문시스템과의 연계테스트 등을 통해 전산시스템을 충분히 점검하고, 그 결과를 넥스트레이드에 제출할 것
2. 매년 위탁자가 설치한 전산시스템과의 연계 등을 점검할 것(전산시스템의 변경 등에 따라 위탁자의 전산시스템과의 연계 등을 점검한 경우 해당 연도의 점검을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② 규정 제46조제1항에 따라 회원은 위탁자의 고속 알고리즘거래와 관련한 위험관리 및 금융사고 예방을 위하여 적절한 내부통제장치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축하여야 한다.

1. 위탁자의 재무건전성, 신용도 등을 평가하여 적절한 주문한도를 부여하고 해당 한도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것
2. 고속 알고리즘거래 모니터링 등을 통하여 위탁자의 관련 규정 및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 등을 감시·감독할 것
3. 위탁자의 고속 알고리즘거래 관련 사고 또는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효과적으

로 대처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매뉴얼 등 적절한 통제 및 대응 체계를 마련할 것

③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10년간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규정 제46조제2항에 따라 넥스트레이드가 해당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1. 고속 알고리즘거래자의 등록 및 거래에 관한 자료
2.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감독 결과 및 관련 자료

제7장 보칙

제46조(매매거래내용의 통지) ① 규정 제49조제1항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회원번호
 2. 종목명
 3. 체결가격 및 체결수량
 4. 매도 또는 매수의 구분
 5. 위탁매매 또는 자기매매의 구분
 6. 그 밖에 넥스트레이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매매거래내용의 통지는 회원시스템에 전송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회원이 매매거래내용을 통보받은 때에 그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본다.

제47조(매매관련자료의 보존) 규정 제50조제1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내용”이란 제12조제1항제27호에 따른 주문입력매체의 식별번호를 말한다.

제48조(시장감시 등을 위한 정보의 제공 방법) 규정 제51조제2항에 따라 시장감시 등을 위한 정보의 제공은 서면(「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산자료의 방법에 의한다.

제49조(매매체결대상종목 및 거래량 관리 등) ① 규정 제52조제1항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3과 같다. 다만, 규정 제52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26. 9. 9.>

② 규정 제52조제3항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호가의 제한

2. 다음 각 목의 방법에 의한 매매체결대상종목의 변경 <개정 2025. 8. 14.>

가. 규정 제52조제2항제1호의 기준, 시장의 거래상황, 종목별 거래량 등을 고려하여 넥스트레이드가 선정한 종목을 일정 기간 동안 매매체결대상종목에서 제외. 다만,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구성 종목은 달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5. 8. 14., 본문개정 2025. 9. 8.>

나. 규정 제52조제2항제2호의 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종목을 일정 기간 동안 매매체결대상종목에서 제외 <개정 2025. 8. 14.>

3. 삭제 <2025. 8. 14.>

4. 그 밖에 거래량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부 칙 <2025. 2. 11>

이 세칙은 2025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는 전산프로그램 개발 기간 등을 고려하여 넥스트레이드가 따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 2. 17>

이 세칙은 2025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 3. 25>

이 세칙은 2025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 8. 14>

이 세칙은 2025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 9. 8>

이 세칙은 2025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6. 8. 10>

이 세칙은 202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6. 9. 9>

이 세칙은 2026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일괄호가취소 신청사항

(제18조제2항 관련)

항목		내용
회원번호		해당 회원이 제출한 호가에 한하여 일괄호가취소 적용
적용범위 ¹⁾	고속 알고리즘거래번호	제43조제6항에 따라 넥스트레이드에 신고한 고속 알고리즘거래번호(고속 알고리즘거래자 등록번호와 위험관리번호가 결합된 여섯자리의 번호)
	알고리즘거래 계좌번호	규정 제44조제2항 및 제45조제2항에 따라 넥스트레이드에 신고한 계좌번호
적용증권 ²⁾	상품ID	증권(주식·DR) 구분과 해당 증권이 상장된 증권시장(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구분의 조합
	종목코드	한국거래소가 종목별로 부여한 12자리의 국제증권식별번호(ISIN)
그 밖의 조건	매도·매수 구분	가. 매도 나. 매수 다. 매도 및 매수
	호가그룹번호 ³⁾	회원이 호가의 구분을 위하여 입력한 그룹번호

- 1) '고속 알고리즘거래번호'를 입력하면 해당 번호가 입력된 모든 호가에 일괄호가취소가 적용되며, '알고리즘거래계좌번호'를 입력하면 해당 계좌에서 제출된 호가에 한하여 적용됨
- 2) '상품ID'를 입력하면 그에 속하는 모든 종목에 대하여 적용되며, '종목코드'를 입력하면 해당 종목에 한하여 적용됨
- 3) '호가그룹번호'를 입력하면 해당 호가그룹에 해당하는 호가에 한하여 적용됨

[별표 2] 알고리즘거래계좌 신고사항

알고리즘거래계좌 신고사항

(제42조 관련)

항목		내용
신고사유		설정 ☐ 변경 ☐ 해지 ☐
시장구분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구분
계좌번호		
외국인투자자 구분		제12조제1항제25호의 내용
투자자분류코드		제12조제1항제26호의 내용
자가·위탁 구분		
주문세션 ID		신고 계좌가 전용세션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입력
업무담당자	성명	
	부서	
	직위	
	전화번호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주소	

매매체결대상종목 선정기준

(제49조 관련)

I. 정규시장 및 종가매매시장

1. 정기변경

가. 심사대상 및 심사기준일

- 1) 심사기준일 : 매 분기말의 5 매매거래일 전일
- 2) 심사대상종목 : 심사기준일 현재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은 제외한다.
 - 가) 외국주권, 투자회사주권, 부동산투자회사주권, 선박투자회사주권, 사회간접
자본투융자회사주권 및 기업인수목적회사주권
 - 나) 의결권이 없는 상장주권
 - 다) 상장주식수가 5만주 미만인 증권
 - 라) 한국거래소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상장을 폐지하기로 결정한 증권(상장폐지사유가 이전상장인 경우는
제외)
 - 마) 한국거래소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관리종목 또는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 지정한 증권
 - 바) 발행인과 금융투자업자 간의 계약에 따라 해당 증권을 상장한 증권시장에
서 그 증권에 대한 유동성공급 및 시장조성을 하기로 한 경우 해당 증권
 - 사) 한국거래소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및 「코스닥시장 업무규정」에
따라 단일가매매대상 저유동성종목으로 지정한 증권
 - 아) 그 밖에 주가,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매매체결대상종목에서 제외하는 것
이 필요하다고 넥스트레이드가 인정하는 증권

나. 선정 기준 및 방법

심사기준일 현재 심사대상종목 중 1) 또는 2)에 해당하는 종목. 다만, 규정 제52조제2항 각 호의 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1) 또는 2)의 적용 기준과 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 1)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구성 종목
- 2) 1) 외의 종목 중 시가총액, 거래대금 등을 고려하여 넥스트레이드가 선정한 종
목

다. 변경일 : 심사기준일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의 첫 매매거래일

2. 수시변경

가.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에 편입되는 종목은 해당 편입일에 매매체결대상종목에 포함

나. 매매체결대상종목이 정기변경 심사대상종목의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일에 매매체결대상종목에서 제외

3. 매매체결의 제한

매매체결대상종목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일 또는 해당 기간 동안 매매체결을 제한

가. 상장 또는 자본감소 등의 사유로 한국거래소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및 「코스닥시장 업무규정」에 따라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의 방법으로 최초의 가격을 결정하는 종목

나. 한국거래소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및 「코스닥시장 업무규정」에 따라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한 종목

다. 한국거래소가 「시장감시규정」에 따라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또는 이상급등종목으로 지정한 종목

II. 대량·바스켓매매시장

1. 매매체결대상종목 선정기준 :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 및 주식예탁증권. 다만, 매매체결일 현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은 제외한다.

가. 의결권이 없는 상장주권

나. 상장주식수가 5만주 미만인 증권

다. 한국거래소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상장을 폐지하기로 결정한 증권(상장폐지사유가 이전상장인 경우는 제외)

라. 한국거래소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관리종목 또는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 지정한 증권

마. 발행인과 금융투자업자 간의 계약에 따라 해당 증권을 상장한 증권시장에서 그 증권에 대한 유동성공급 및 시장조성을 하기로 한 경우 해당 증권

바. 상장 또는 자본감소 등의 사유로 한국거래소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및 「코스닥시장 업무규정」에 따라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의 방법으로 최초의 가격을 결정하는 증권

- 사. 신규상장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일이 경과하지 않은 증권(이전상장의 경우는 제외)
- 아. 한국거래소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및 「코스닥시장 업무규정」에 따라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한 증권
- 자. 한국거래소가 「시장감시규정」에 따라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또는 이상 급등종목으로 지정한 증권
- 차.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매매체결대상종목에서 제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넥스트레이드가 인정하는 증권

Ⅲ. 공지 및 안내

1. 매매체결대상종목의 선정 결과 및 일자별 매매체결 가능 종목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

호가집계표

종목 : 기준가 : 현재가 : 거래량 :
체결번호 : 최초가격 : 최고가격 : 최저가격 :

1)	(매도호가건수)	(매도호가수량)	(가격)	(매수호가수량)	(매수호가건수)
2)					
3)					

- 주1) 각란의 첫째줄은 합계수치를 기재
2) 각란의 둘째줄은 시장가호가의 수치를 기재
3) 각란의 셋째줄 이하는 가격별 수치를 기재

착오매매처리약정서

넥스트레이드(이하 “갑”이라 한다)와 ××××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NXT시스템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넥스트레이드가 시장에서 매매계약체결의 중개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착오(이하 “착오매매”라 한다)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제1조 “갑”의 매매체결 과정에서 착오매매가 발생한 경우 “을”은 “갑”의 요청(별첨 1 착오매매인수요청서)에 의하여 이를 상품으로 인수한다.

제2조 “을”은 “갑”의 요청에 의하여 인수한 상품을 다음 매매거래일에 시장(증권시장을 포함한다)에서 정리하고, 그 결과를 “갑”에게 통지(별첨 2 착오매매처리결과통지서)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이를 정리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다음 매매거래일에 이를 처리할 수 있다.

제3조 “갑”은 “을”이 착오매매를 인수하여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익(증권거래세, 매매거래에 수반되는 제반수수료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을”의 청구(별첨 3 착오매매정산청구서)에 의하여 지체 없이 정산한다. 다만 “을”이 착오매매를 인수하여 처리하는 과정에서 “을”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갑”의 청구(별첨 4 착오매매정산청구서)에 의하여 사후에 정산한다.

제4조 “을”이 인수한 상품에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발생하는 경우 그 손익의 정산방법 기타 이 약정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갑”과 “을” 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5조 이 약정은 약정일부터 1년간 유효하며, 유효기간 만료일 전 30일까지 이의가 없는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종전의 약정과 같은 내용으로 약정한 것으로 본다.

위와 같이 약정하며, 이 약정을 증명하기 위하여 약정서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기명날인하고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넥스트레이드

대표이사

(인)

“을”

××××주식회사

대표이사

(인)

[별첨 1]

착오매매인수요청서

××××주식회사 귀중

착오매매처리약정서 제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당사의 착오매매분을 귀사의 상품으로 인수 처리하도록 요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넥스트레이드

시장운영본부장 (인)

종목명	매매일	결제일	매도·매수 구 분	수 량	가 격	비 고

[별첨 2]

착오매매처리결과통지서

넥스트레이드 귀중

착오매매처리약정서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당사가 인수한 상품의 처리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주식회사

상품운용담당부서장 (인)

[illegible]

[별첨 3]

착오매매정산청구서

넥스트레이드 귀중

착오매매처리약정서 제3조에 따라 당사가 귀사의 착오매매를 인수 처리함에 따라 발생한 손익을 다음과 같이 정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주식회사
대표이사 (인)

구분			매도	매수
종목명				
착오매매 인수내용	처리대금	매매일자		
		수량		
		가격		
		금액(A)		
	제수수료	매매수수료		
		증권거래세		
		기타		
		소계(B)		
착오매매 처리결과	처리대금	매매일자		
		수량		
		가격		
		금액(C)		
	제수수료	매매수수료		
		증권거래세		
		기타		
		소계(D)		
정산액 (E)				

[별첨 4]

착오매매정산청구서

××××주식회사 귀중

착오매매처리약정서 제3조에 따라 귀사가 당사의 착오매매를 인수 처리하는 과정에서 귀사의 착오에 따라 발생한 손익을 다음과 같이 정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넥스트레이드
대표이사 (인)

구분			매도	매수
종목명				
착오매매 인수내용	처리대금	매매일자		
		수량		
		가격		
		금액(A)		
	제수수료	매매수수료		
		증권거래세		
		기타		
		소계(B)		
착오매매 처리결과	처리대금	매매일자		
		수량		
		가격		
		금액(C)		
	제수수료	매매수수료		
		증권거래세		
		기타		
		소계(D)		
정산액 (E)				

고속 알고리즘거래자 등록신청서

넥스트레이드 귀중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3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속 알고리즘거래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신청일 : 년 월 일

신청회사 : ××××주식회사

대표이사 : (인)

구분	세부 내용	
법인·개인 구분	법인 ☐ 개인 ☐	
법인정보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¹⁾	
	회원 여부	회원 ☐ 위탁자 ☐
	대표자명	
개인정보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	
	단체 여부 ²⁾	개인 ☐ 단체 ☐
한국거래소 등록 여부	등록 ☐ 미등록 ☐	
고속 알고리즘거래자 등록번호 ³⁾		
투자자분류코드		
외국인투자자 구분	외국인 ☐ 외국인 아님 ☐	
국적		
업무 개요 (500자 이내)		

1) 외국법인의 경우 해외 설립국의 법인(사업자)등록증(COI)상의 번호를 기재

2) 단체를 대표자 개인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 '단체' 선택

3) 한국거래소가 발급한 등록번호(4자리)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번호를 기재

고속 알고리즘거래자 등록정보 점검 확인서

넥스트레이드 귀중

< 등록정보 >

법인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대표자명	
개인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	

* 외국법인의 경우 해외 설립국의 법인(사업자)등록증(COI)상의 번호를 기재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3조에 따른 고속 알고리즘거래자 등록 및 제44조제2항에 따른 거래자 등록번호의 사용권한 신청과 관련하여 상기 위탁자의 등록정보를 관련 서류 등을 통해 점검하고 틀림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주식회사
대표이사 (인)

고속 알고리즘거래자 등록요건 확인서

넥스트레이드 귀중

당 사는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3조 및 제44조제2항에 따라 위탁자의 고속 알고리즘거래자 등록요건 충족 여부를 다음과 같이 확인합니다.

1. 위탁자 :

2. 고속 알고리즘거래자 등록요건 충족 여부

등록요건	충족 여부
☐ 위탁자가 이용하는 매매주문시스템 등 전산시스템이 고속 알고리즘거래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안정성 및 적정성을 갖출 것*	충족 / 미충족
☐ 위탁자가 고속 알고리즘거래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할 것	충족 / 미충족
☐ 위탁자가 고속 알고리즘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내부통제 조직 및 2인 이상의 전문인력 등 관리체계를 갖출 것	충족 / 미충족
○ (상기 요건 미충족시) 고속 알고리즘거래에서 발생하는 제반 위험에 대하여 위탁자가 적시에 인식·평가·감시·통제가 가능한 것으로 회원이 판단하거나 회원이 직접 관련 위험을 관리하는 경우	해당 / 미해당

* 요건 충족 여부 확인을 위해 전산시스템 점검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등록 신청 전 위탁자가 설치한 매매주문시스템과의 연계테스트 등을 통해 점검한 전산시스템 점검 결과(담당 부서장 등의 결재 포함) 첨부

년 월 일

×××× 주식회사

담당자 소속 및 성명 (인)

대표이사 (인)

개인(신용)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주식회사 귀중

「개인정보 보호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속 알고리즘거래자 등록 및 고속 알고리즘거래 위험관리장치 이용과 관련하여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넥스트레이드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제공받는 자 : 넥스트레이드 주식회사

2. 제공하는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법인	개인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대표자명, 고속 알고리즘거래계좌번호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 고속 알고리즘거래계좌번호

3. 제공받는 자의 개인(신용)정보 취득 목적

- 고속 알고리즘거래자 현황 파악 및 안정적 시장관리 등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

4. 제공받는 자(넥스트레이드)의 제3자 제공

- 법률의 규정에 따라 관계기관이 요청하거나 한국거래소가 이상거래의 심리 또는 회원의 감리를 수행하기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넥스트레이드는 수집한 개인(신용)정보를 관계기관 또는 한국거래소에 제공할 수 있음

5. 개인(신용)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고속 알고리즘거래자 등록 말소 후 6개월 경과시 파기

위와 같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활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하지 않을 시 넥스트레이드에 고속 알고리즘거래자로 등록 불가

년 월 일

법인명/성명 (인)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